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9호서식] <개정 2012.10.5>

석유대체연료 [ ] 제조·수출입업 [ ] 판매업 [ ] 개 시 [ ] 휴 업 [ ] 폐 업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소재지	
사업의 개시	년 월 일 사업개시	
사업의 휴·폐업	기간	
	사유	
사업의 재개시	년 월 일 사업 재개시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2조제4항·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·제4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

첨부서류	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·제출	→	접 수	→	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	→	결 재	→	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
한국석유관리원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한국석유관리원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한국석유관리원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한국석유관리원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